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42
----------	-------

발의연월일 : 2022. 3. 23.

발 의 자 : 유경준 · 김용판 · 권명호
이 영 · 김승수 · 김태호
김 웅 · 조명희 · 추경호
황보승희 · 태영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하면서,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이하 “문화비”라 함)에 대하여 30%의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정책적으로 문화예술 부문의 소비를 진작하고 있음.

한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체육경기에 대한 인기가 상승하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체육시설에서 이용한 금액(이하 “체육시설사용분”이라 함)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국민의 여가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더욱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인하여 체육 관련 업계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사용분의 30%를 소득공제하면서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기본 공제한도 10

0만원에 직계비속 1인당 50만원을 추가한 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체육 시설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에 입장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체육시설사용분”이라 한다) $\times$ 100분의 30.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체육시설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2제2항제4호 중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및 체육시설사용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항 제6호나목 중 “도서·신문·공연

· 박물관·미술관사용분”을 각각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및 체육시설사용분”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1) 중 “직불카드등
사용분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을 “직불카드등사
용분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 체육시설사용분”
으로,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
분”을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 체육시설사용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의”를 “제3호 및 제3호의2의”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7호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7호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
만원을 한도로 하되, 제3항에 따라 직계비속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키는 경우 제3호의2의 금
액은 18세 미만인 직계비속 1인당 연간 50만원을 추가한 금액을 한도
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
의2제2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략)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1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②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 ----- ----- ----- ----- ----- ----- ----- ----- ----- -----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u>에 따른 체육시설에 입장하</u> <u>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하기</u> <u>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u> <u>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u> <u>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이</u> <u>항에서 “체육시설사용분”이</u> <u>라 한다) × 100분의 30. 이</u> <u>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u> <u>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u> <u>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u> <u>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u> <u>른다)에 따른 체육시설사용</u> <u>분의 인정방법 등에 필요한</u> <u>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u>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u> <u>용분 및 도서 · 신문 · 공연 ·</u> <u>박물관 · 미술관사용분에 포</u> <u>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u> <u>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u> <u>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u> <u>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u> <u>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u> <u>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u>	4. ----- ----- ----- <u>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u> <u>용분, 도서 · 신문 · 공연 · 박</u> <u>물관 · 미술관사용분 및 체육</u> <u>시설사용분</u> ----- ----- ----- ----- ----- -----

[illegible]

5. -----

도서 · 신문 · 공
연 · 박물관 · 미술관사용분 및
체육시설사용분-----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생략)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 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text{신용카드사용분} \times 100\text{분의 } 15 + (\text{최저사용금액} - \text{신용카드사용분}) \times 100\text{분의 } 30$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6.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도서·
신문·공연·박물관·미술
관사용분 및 체육시설사용
분-----

다. -----

1) -----

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 100분의 40

2) (생략)

7. (생략)

③ ~ ⑨ (생략)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친 금액) 중 작거나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 체육시설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 체육시설사용분-----

2)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⑩ -----

-----제3호 및 제3호의
2의-----

<u>같은 금액(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u> 1. ~ 3. (생략)	<u>-----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7호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하되, 제3항에 따라 직계비속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키는 경우 제3호의2의 금액은 18세 미만인 직계비속 1인당 연간 50만원을 추가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u> -----. 1. ~ 3. (현행과 같음)
--	--